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54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 변호사 우승원, 진현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기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2,92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금액은 5억 3,550만 원, 보증기한은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 배산지점에서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2019. 9. 6.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20. 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550,662,635원을 대위변제하고, 그중 1,355,621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비용으로 2,312,151원을 지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7. 29. 사내이사인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9.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은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1) 적극재산

번호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
1	익산시 F 창고용지 3,299㎡ 및 그 지상 건물	1,225,016,200	갑 10
2	익산시 G 답 759㎡	23,529,000	갑 9
3	익산시 H 답 2,175㎡	73,950,000	갑 9
4	이 사건 각 부동산	162,686,000	갑 7
5	렉스턴 스포츠(차량번호 1 생략)	21,900,000	갑 11-1, 2
합계		1,507,081,200	

2) 소극재산

번호	채권자	채무액(원)	증거
1	I은행	240,000,000	금융거래정보회신
5	E 주식회사	1,230,000,000	
6	주식회사 J	9,957,460	
7	K 주식회사	142,328,300	
합계		1,622,285,76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9. 9. 6.경부터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이었기에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원고가 2020. 2. 14.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소외 회사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융통하여 준 사업자금의 변제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악화된 자금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L에 채권최고액 8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62,928,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162,92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62,928,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목 록

1. 익산시 M 창고용지 1,046㎡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저온창고 201㎡ 끝.

